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582
----------	-------

발의연월일 : 2025. 9. 1.

발 의 자 : 최민희 · 김 현 · 채현일
정진욱 · 김한규 · 민형배
노종면 · 김우영 · 박해철
황정아 · 박민규 · 양부남
이광희 · 박주민 · 이정현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편향적인 기사배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자극적 제목 사용 등으로 인해 뉴스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특히 특정 세력에 의해 댓글을 통한 인위적 여론조작과 허위조작정보의 유포가 벌어지고 있어 민주적 여론형성이 위협받고 있음.

또한 구글 등 일부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

하면서도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및 기사배열 책임자 공개 등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이에 독자의 기사 선택권을 강화하고, 기사 열람 시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볼 수 있게 하는 아웃링크 제도를 도입 하며, 포털을 통한 기사 제공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뉴스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포털을 통한 댓글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려 함. 아울러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국내에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도 등록하도록 하여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함.(안 제9조제7호 및 제9호 신설 등).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국내 주된 업무담당자 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9.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국내 사무소·영업소 소재지(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국내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가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이하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라 한다)인 경우는 국내 사무소·영업소 소재지나 업무담당자의 주소 또는 국내에 사무소·영업소나 업무담당자가 없으면 제9조의3에 따른 국내대리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국내대리인의 지정 등) ① 국내에 사무소·영업소나 업무담당자가 없는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등록
2. 제9조의4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부여된 의무 및 준수사항 등의 이행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사무소·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의4(자료의 제출 등)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요청을 받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중 매출액,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사를 제공하는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방송, 잡지 등(이하 이 조에서 “언론”이라 한다)이 직접 선정하여 배열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술적 조치
2. 독자가 기사를 검색하거나 열람할 때 특정 언론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등 독자 개인별 기사배열이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3. 독자가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열람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③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내부기준에 해당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그

제공 또는 매개를 거부할 수 있다.

1. 기사 제목 또는 본문에 욕설, 비속어 등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기사
2. 다른 언론의 기사를 무단 복제·전재한 기사
3. 기사 형식을 가장하여 광고·홍보 목적으로 작성된 기사
4. 열람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악성프로그램이 전달되거나 유포될 가능성이 있는 기사

④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한 내역과 제3항에 따라 마련한 내부 기준 및 제공 또는 매개를 거부한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및 공개하여야 한다.

제39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9조의4를 위반하여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7. (생 략)

<신 설>

8. ~ 11.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설>

국내대리인의 성명·생년월일
· 주소(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자가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8. (현행 제7호와 같음)

9.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국내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국내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경우
에 한정한다)

10. ~ 13. (현행 제8호부터 제
11호까지와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
는 자가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
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
으로 발행하려는 자(이하 “해
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라
한다)인 경우는 국내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나 업무담당자의
주소 또는 국내에 사무소·영
업소나 업무담당자가 없으면
제9조의3에 따른 국내대리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3(국내대리인의 지정 등)

① 국내에 사무소·영업소나 업무담당자가 없는 해외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등록
2. 제9조의4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부여된 의무 및 준수사항 등의 이행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신 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사무소·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의4(자료의 제출 등)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의 준수사항) ① (생략)
<신설>

<신설>

으로 정하는 경우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중
매출액,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조
치를 하여야 한다.

1. 기사를 제공하는 신문, 인터
넷신문, 뉴스통신, 방송, 잡지
등(이하 이 조에서 “언론”이
라 한다)이 직접 선정하여 배
열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
하는 기술적 조치

2. 독자가 기사를 검색하거나
열람할 때 특정 언론을 추가
하거나 제외하는 등 독자 개
인별 기사배열이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3. 독자가 기사를 제공하는 언
론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
사를 열람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③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u><신 설></u> ② ~ ④ (생 략) 제39조(과태료) ① (생 략)	<u>내부기준에 해당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그 제공 또는 매개를 거부할 수 있다.</u> 1. <u>기사 제목 또는 본문에 욕설, 비속어 등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기사</u> 2. <u>다른 언론의 기사를 무단 복제·전제한 기사</u> 3. <u>기사 형식을 가장하여 광고·홍보 목적으로 작성된 기사</u> 4. <u>열람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악성프로그램이 전달되거나 유포될 가능성이 있는 기사</u> ④ <u>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한 내역과 제3항에 따라 마련한 내부기준 및 제공 또는 매개를 거부한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및 공개하여야 한다.</u> ⑤ ~ ⑦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3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u><신설></u> 2. ~ 9. (생략) ③ (생략)	② -----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9조의4를 위반하여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u> 2. ~ 9.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